제323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○ 202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27년 출연금 : 695백만원

○ 사업명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

○ 사업목적 :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지원

○ 지원대상 :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○ 지원내용

- 운전자금(최대 5억원) : 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
-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(최대 30억) : 건축비, 매입비, 시설비 등

○ 출연기관 : 경기도

○ 출연현황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1982~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출연금	7,925	3,842	238	294	826	1,088	837	800

○ 지원실적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
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
실적	1,728	101,842	1,089	87,717	1,081	76,633	913	64,931	1,022	105,186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위하여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억 9,500만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.
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·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관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.

○ 출연액은 도의 2027년도 예산 630억원에 남양주시 협조융자 잔액 비율 약 3.68%와 시 부담률 3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, 전년도 출연금 8억원보다 1억 500만원 감소한 규모임. 이는 2026년 5월 기준 도 전체 협조융자 잔액 중 남양주시 기업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분담하는 방식임.

○ 검토 결과, 본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고,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향후에는 관내 기업의 자금 수요와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, 지원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를 강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1 관계법령

☑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 및 시·군의 출연금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☑ 「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

제20조(경영 지원)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